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7가합580687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사해정

피 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롬

담당변호사 이세영

변론 종결 2019. 2. 27.

판결 선고 2019.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46,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200,000원 및 그 중 517,324,961원에 대하여는 2017. 4. 13.부터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8,875,0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와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및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종	계약체결일	공사금액(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변경계약
기계설비공사	2015. 12. 1.	3,353,000,000원 (부가세 624,403원)	2015. 12. 1. ~ 2018. 7. 19.	2017. 2. 14. 공사대금 150,000,000원 증액
소방설비공사	2015. 12. 1.	1,759,000,000원 (부가세 558원)	2015. 12. 1. ~ 2018. 7. 19.	

위 각 계약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하수급인인 D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D은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D이 보증대상인 공사 등과 관련하여 보증기한 내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인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지급하는 것이다.

순번	계약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비고
1-1	2015. 12. 3.	335,300,000원	2015. 12. 1. ~ 2018. 7. 19.	기계설비공사
1-2	2017. 2. 15.	15,000,000원	2017. 2. 14. ~ 2018. 7. 19.	기계설비공사 변경계약
2	2015. 12. 3.	175,900,000원	2017. 12. 1. ~ 2018. 7. 19.	소방설비공사

라. 그런데 D은 이 사건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를 수행하다 경영이 악화되어 2017년1월말부터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던 중 2017. 2. 15.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7. 2. 27.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7. 3.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7. 1. 31. 기준으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기성금 및 잔여공사대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였다.

공사명	계약금액(부가세 제외)	기지급 기성금	잔여공사금액(부가세 제외)
기계설비공사	3,502,375,597원	1,266,900,000원	2,235,475,597원
소방설비공사	1,758,999,442원	1,128,800,000원	630,199,442원

마. 원고는 위와 같이 D과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 중 잔여 공사에 관하여 후속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종	업체명	계약체결일	공사금액(부가세 제외)	공사기간
기계설비공사	E	2017. 3. 22.	2,581,000,000원	2017. 3. 22. ~ 2018. 7. 19.
소방설비공사	E	2017. 3. 22.	802,000,000원	2017. 3. 22. ~ 2018. 7. 19.

바. 원고는 2017. 4. 12.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에는 피고가 보증채권자의 보증금청구문서(심사자료 포함)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및 기성금 정산에 따라 남은 공사대금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2,235,475,597원,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의 경우 630,199,442원이고, 남은 잔여공사에 필요한 공사금액은 이 사건에서 감정인이 감정한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3,563,180,308원,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의 경우 1,135,057,196원이다.

2) 따라서 원고는 D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1,327,704,711원(=3,563,180,308원-2,235,475,597원),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의 경우

504,857,754원(=1,135,057,196원-630,199,442원)의 손해를 보았고, 위손해액이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합계금 526,200,000원(=335,300,000원+15,000,000원+175,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2조에 의하면, D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거나, D이 계약이 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하고(제8항), 손실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그 초과금액을 D에 청구할 수 있다(제9항).

나)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다.

다) 원고는 2017. 3. 6. D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기성금을 정산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금액 중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2,235,475,597원,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의 경우 630,199,442원의 잔여공사금액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후 남은 잔여공사를 위하여 후속업체인 E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581,000,000원,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802,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후 원고가 남은 잔여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는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3,563,180,308원,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의 경우 1,135,057,196원인데(이하 위 공사비를 '이 사건 감정공사비'라 한다), 이 사건 감정공사비는 남은 잔여공사의 물량을 근거로 품 및 노임단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재료단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물가 전문 조사기관 발행지인 거래가격(G협회), 물가자료(H협회),

물가정보(I) 등의 가격을 적용하고, 적정자료가 없을 시에는 시중의 거래가격 및 건축사례를 준용하고, 원가계산은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보증금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고,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은 남은 잔여공사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지출을 면하게 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잔여 공사금액의 차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남은 잔여공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E와의 하도급계약 체결로 지출하게 된 공사금액이므로,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은 E와의 하도급계약상 공사금액과 지출을 면하게 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잔여공사금액의 차액인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345,524,403원(=2,581,000,000원-2,235,475,597원),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의 경우 171,800,558원(=802,000,000원-630,199,442원)이고, 위 각 금액은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의 범위 내이다.

원고는, 원고가 남은 잔여공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객관적인 공사금액인이 사건 감정공사비이므로 이 사건 감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정공사비는 남은 잔여공사의 물량에 대하여 표준품셈 및 시장 거래가격인 재료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예상 공사금액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517,324,961원(=345,524,403원+171,800,5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액배상조항과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물취조항을 함께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2조에서, D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거나, D이 계약이 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하고(제8항), 손실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고는 그 초과금액을 D에 청구할 수 있다(제9항)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서 D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D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원고의 손실에 상당한 금액만 원고에게 귀속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D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과 별도로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위약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별개의 금원이므로 위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증액대금 공제

1)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158,704,000원의 증액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금액은 D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2)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2조에 의하면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계약금액의 5/100 이상인 경우 D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9. 1.자 조정기준일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이 사건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 부분 공사대금을 184,663,000원(기계설비 122,000,000원 + 소방설비 62,663,000원) 증액하고, 2017. 1. 31.자 조정기준일에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 부분 공사대금을 95,058,000원(기계설비 60,000,000원 + 소방설비 35,058,000원) 증액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율은 87.2%이고,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의 하도급율은 84.5%이다.

4)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금액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액으로 D에 지급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액 : 158,704,000원
 $(122,000,000원 + 60,000,000원) \times 0.872$

나)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액 : 82,574,245원
 $(62,663,000원 + 35,058,000원) \times 0.845$

5)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액 합계 241,278,245원(=158,704,000원+82,574,245원)은 D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간접비 등 공제

1) 피고는, 원고가 E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간접비, 안전관리비 등의 실제계약금액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원가내역서에 명시된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의 요율적용에 따라 산정한 계약금액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304,032,609원(=실제 계약금액 435,597,090원-요율 적용에 따른 계약금액 131,564,481원), 이 사건 소방설비공사의 경우 31,455,267원(=실제 계약금액 92,411,755원-요율 적용에 따른 계약금액 60,956,488원)의 각 차이가 발생하는데, 위 각 차액은 D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는 D의 공사 중단 무렵인 2017년 1월말부터 원고가 E와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7.3. 22.까지 약 2달가량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애초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사의 수행이 필요하였던 점, ②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 및 내역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③ E와의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이 이 사건 감정공사비보다 낮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와의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D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노무비 공제

1) 피고는, 원고가 E와 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정한 바없는 노무비 합계 7,350,305원(=기계설비 관련 추가 노무비 3,028,179원+소방설비 관련추가 노무비 4,322,126원)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D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와 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없었던 노무비를 추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노무비를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공사대금산정방식과 관련하여 노무비를 별도로 산정할 것인지, 다른 항목에 포함시킬 것인지여부에 관해 개별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2달가량 중단되었던 공사를 후속 업체가 최초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당초 공사계약에서 예상한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한 공사 진행이 필요하여 노무비를 추가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된 노무비는 D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시공물량 과소 적용 금액 공제

1) 피고는, 원고가 D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타절·정산하면서 인정한 시공물량보다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D의 기성내역으로 인정한 시공물량이 합계 60,138,390원(=기계설비 부분 16,684,097원+소방설비 부분 43,454,293원) 정도 많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4, 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D 사이에 타절·정산시 인정한 기성내역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정한 D의 기성내역이 다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D 사이에 이미 기성금에 관하여 정산이 완료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별도로 원고에게 추가 정산금을 지급할의무가 발생한다거나 E와의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이 감액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금액을 원고에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단가 상승 부분 공제

1) 피고는, 원고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계약에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가 이상을 적용하여 E와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255,552,313원(=기계설비 부분 122,910,914원+소방설비 부분 132,641,399원)의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으므로, 위 255,552,313원은 D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고가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정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단가(공인된 단가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체 예산 산출의 근거가 되는 단가로 보인다)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단가는 전체 공사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E와의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합리성 여부는 개별 단가가 아닌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감정공사비와 비교하면 E와의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액된 공사금액이 D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하자보수 예치금 부분

1) 피고는, D은 이 사건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합계 70,000,000원(=기계설비공사 관련 38,000,000원+소방설비공사 관련 32,000,000원)을 예치하였고, 따라서 D이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는 D에게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손해액에 서 위 반환받을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7.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예치금 70,00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하자보수 예치금 공제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사수급자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할 의무가 있고, 다만 현실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때까지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것인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은 위와 같은 공제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마친 상태라고 보이므로 D이 현재 위와 같은 대용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D이 현재도 위와 같은 대용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D이 원고에게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가.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원고의 증가 된 공사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액을 공제한 276,046,716원(=517,324,961원-241,278,2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금 청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2017. 6.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 제9호증, 을 제12,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심사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원고가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증금의 이행기를 위와 같이 정한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남준우, 판사 김경준